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4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1일
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유 용, 이광호, 권수정,
김화숙, 고병국, 김평남,
박기재, 권영희, 정진술,
송아량, 노식래, 최웅식,
김정태 의원 (13명)

1. 제안 이유

- 근로기준법상 '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'가 시행('19.7.16.)됨에 따라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,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.
-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직장 내 업무 배제,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직장 내 업무 배제,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조의4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4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교육감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 배제,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3조의4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교육감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</u> <u>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</u> <u>배제,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</u> <u>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</u> <u>니 된다.</u></p>